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November 1, 2021

1. 서론

지난 2021. 8. 20.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이하 “**본 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의결되어 2021. 11. 1.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십여 년 동안 중국은 온라인 산업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산업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남용, 개인정보를 이용한 무분별한 마케팅, 판매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네트워크 안전법>(网络安全法), <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 등 일부 법규정에 개인정보 관련 조항이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인터넷 사용자 수만 10억 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산적인 법체계로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8. 9. 7.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 기획에 본 법이 포함되어 입법 절차가 개시되었고, 총 3차례의 심의를 거쳐 2021. 8. 20. 정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법은 중국 최초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 법률로서, 이미 시행중인 <네트워크 안전법>(网络安全法), <데이터 안전법>(数据安全法)과 함께 중국의 데이터 3법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본 법의 내용 중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이외의 해외에서 중국 경내 개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역외적용이 가능하여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경우 중국에 자회사 등 사업체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본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본 법 위반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본 법의 규정 중 한국기업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위주로 설명해 드리고 시사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 용어 및 적용범위

(1) 중요 용어

본 법의 규정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본 법 중 중요 용어들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록된 기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인 개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뜻하고 익명 처리를 거친 정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제4조 제1항).
- ②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사용, 가공, 전송, 제공, 공개, 삭제 등을 포함함(제4조 제2항).
- ③ **민감개인정보**: 유출 또는 불법적으로 사용될 시 개인의 인격존엄이 침해당하거나 인신·재산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말하고 생체정보, 종교신앙, 특정신분, 의료건강, 금융계좌, 이동경로 등 정보 및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함(제28조 제1항).
- ④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 활동 중에 자주적으로 처리목적, 처리방식을 결정하는 조직, 개인을 말함(제73조 제1호).
- ⑤ **자동화 의사결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의 행위습관, 취미 또는 경제, 건강, 신용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활동을 말함(제73조 제2항).

본 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식별성”과 “관련성”이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식별성”과 “관련성”에 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국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커서 개인정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2) 적용범위

본 법의 적용범위는 해외기업들의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법에 의하면, 중국 경내에서 중국 경내 개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는 물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중국 경내 개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도 본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

- ① 중국 경내 개인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② 중국 경내 개인의 행위를 분석, 평가하는 경우
- ③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경우

3. 개인정보보호법과 2차 심의안의 비교

서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 8. 20. 정식 제정된 본 법은 총 3차례의 심의를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정된 본 법은 2차 심의안과 대비하여 볼 때 구조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아래와 같이 일부 규정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있었습니다.

- ①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에 “법에 따라 제정한 근로규칙 및 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력자원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하였음(제13조).
- ② 자동화 의사결정을 통하여 각 유형의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였음(제24조).
- ③ “특정한 목적 및 충분한 필요성이 있고 엄격한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민감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추가하고 민감개인정보의 범위에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추가하였음(제28조).
- ④ 개인의 “개인정보 이전권(可携带权)”을 규정하여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플랫폼 사이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45조).
- ⑤ 개인이 사망한 경우 근친속(近亲属)¹ 이 법정 조건에 따라 조회권, 복제권, 삭제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였음(제49조).
- ⑥ (휴대폰 App 등) 응용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남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응용 프로그램에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였음(제61조, 제66조).

4.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1)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

본 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따라야 하는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 ① **합법, 정당, 필요 및 신의성실의 원칙:** 개인정보의 처리는 합법, 정당, 필요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오도, 사기, 협박 등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됨(제5조).
- ② **목적의 명확성 및 최소 필요의 원칙:** 개인정보의 처리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처리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개인의 권익에 영향이 가장 적은 방식을 취하여야 함.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처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 범위 내에서 수집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말아야 함(제6조).

1. 중국 <민법전>(民法典) 제1045조 제2항에 의하면, 근친속이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를 말함.

- ③ **공개·투명 원칙:** 개인정보의 처리는 공개·투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개인정보 처리규칙을 공개하고 처리의 목적, 방식 및 범위를 명시하여야 함(제7조).
- ④ **정확성 및 완전성 원칙:**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질을 보장하여야 하는 바, 개인정보의 부정확성,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됨(제8조).
- ⑤ **안전보장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 활동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함(제9조).

(2) 개인정보처리의 규칙

본 법에는 개인정보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개인정보처리의 규칙이 다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위주로 아래 표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항	구분	규칙
제13조	합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의 조건	<p>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제1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인의 동의를 구한 경우 <i>※ 개인정보처리가 개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는 해당 개인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전제하에서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표시한 것이어야 함(제14조).</i> ② 일방 당사자가 개인인 계약을 체결, 이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또는 법규정에 따라 제정한 근로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른 인력자원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③ 법정 직책 또는 법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④ 돌발적인 공공 보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또는 긴급상황 하에 개인의 생명건강과 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⑤ 공익을 위한 뉴스 보도, 여론 감독 등 행위를 실시하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⑥ 본 법이 규정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개인정보 또는 합법적으로 공개된 기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제20조	개인정보의 공동 처리	<p>2인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공동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과 처리방식을 결정하는 경우, 각자의 권리 및 의무를 약정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자가 공동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함.</p>

조항	구분	규칙
제21조	개인정보의 위탁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처리자가 타인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인과 위탁의 목적, 기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약정하여야 하고 수탁인의 개인정보처리 활동을 감독하여야 함. 수탁인은 약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를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됨.
제23조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처리한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명칭 또는 이름, 연락처, 처리목적, 처리방식 및 개인정보의 종류를 개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개인의 개별 동의를 구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술한 처리목적, 처리방식 및 개인정보의 종류 등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함.
제24조	자동화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동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의사결정의 투명도 및 결과의 공평,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거래 가격 등 거래 조건에 관하여 개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자동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인에게 메시지 발송, 비즈니스 마케팅 등을 진행하는 경우, 개인의 특성과 무관한 사항을 같이 제공하거나 개인에게 편리한 거절 방식을 제공하여야 함.
제27조	기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이 명확히 거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개인정보 및 합법적으로 공개된 기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다만,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개인의 동의를 거쳐야 함.
제28조 ~ 제 43 조	민감개인 정보의 처리	<p>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의 규칙에 따라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정한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엄격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② 개인의 개별 동의를 거쳐야 함. ③ 개인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필요성 및 개인의 권익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여야 함. ④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미성년자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

(3)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업무상의 필요로 인하여 중국 경내에서 수집한 직원, 소비자 등 중국 경내 개인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은 업무 등의 필요에 의한 것에 한하고,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제38조 제1항).

- ① 중국 네트워크 정보부서의 안전평가에 통과하여야 함.
- ② 전문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거쳐야 함.
- ③ 중국 네트워크 정보부서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해외의 개인정보 수령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④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 네트워크 정보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또한, 중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국제협정 중에 중국에서 해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조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제2항).

한편,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상기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해외의 개인정보 수령자의 명칭(또는 이름), 연락처, 처리목적, 처리방식, 개인정보의 종류 및 개인이 본 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식, 절차 등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고 개인의 개별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제39조).

다만, (i) 중요 정보 인프라시설 운영자(CIIO²) 및 (ii) 개인정보 처리량이 중국 네트워크 정보부서에서 규정한 양³에 도달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중국 경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경내에 저장하고 있어야 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 네트워크 정보부서의 안전평가에 통과하여야 합니다(제40조).

아울러, 해외의 조직, 개인이 중국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을 침해하거나 중국의 국가안전, 공공이익을 위협하는 개인정보처리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중국 네트워크 정보부서는 이러한 조직, 개인을 개인정보 제공 제한/금지 리스트에 올려 해당 조직, 개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42조). 또한 여하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중국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에서도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하여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제43조).

2.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Operator

3. 참고로 <네트워크 안전심사 방법(수정 초안 의견수렴안)>[网络安全审查办法(修订草案征求意见稿)] 제6조에 의하면, 100만 이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장악한 중요 정보 인프라시설 운영자(CIIO)가 해외에서 상장하려는 경우, 반드시 네트워크 안전심사 판공실에 네트워크 안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4) 해외에서 중국 경내 개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특별 의무사항

본 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① 내부 관리 제도 제정, ② 개인정보의 분류 관리, ③ 암호화 등 안전기술조치 시행, ④ 개인정보처리 관련 합리적인 내부 권한의 설정 및 종사인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⑤ 개인정보 안전사건 응급예비방안 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기업이 중국 경내 개인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중국 경내 개인의 행위를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중국 경내 개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중국 경내에 특별기구를 설치하거나 대표를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별기구 또는 대표와 관련한 사항은 정부의 담당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벌칙

기존의 법규정들과 대비하여 볼 때, 본 법은 개인정보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본 법을 위반하는 개인정보처리 행위가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성급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담당 정부부서에서 ① 시정명령, 위법소득 몰수, ② RMB 5천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또는 전년도 영업액 5%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관련 업무의 일시 정지 또는 영업 정지 및 정돈⁴, 관련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관련 업무의 인허가 또는 영업 집조⁵를 취소하는 처벌을 동시에 내릴 수 있고 ④ 직접책임이 있는 담당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인원에게는 RMB 10만~100만 위안의 과태료 부과, 일정 기한 내 관련 기업의 이사, 감사, 임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역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제66조).

한편, 본 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 시 개인정보 관련 권익 침해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배상책임 등 침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바(제69조),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개인정보의 위법한 처리로 침해를 입은 피해자를 민사소송 절차에서도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5. 시사점

- (1)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 이미 지난 5월부터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105개 인터넷 플랫폼의 명단을 공개하고 15일 이내 모든 지적 사항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법 제정을 계기로 중국 내 개인정보 보호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업무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본 법과 기타 관련 법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많아질 것이고, 법 위반에 따른 제재의 수위가 한층 강화된 만큼 기존에 비하여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 더 많은 시간, 인력, 비용을

4. 영업을 정지한 상태에서 위반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 행정조치임.

5. 한국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함.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기업들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자사의 개인정보처리 현황과 리스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본 법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제도 제정, 개인정보의 분류 관리, 암호화 등 안전기술조치 시행, 담당인원 배치와 교육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관련 내부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3) 중국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업무상의 필요로 인하여 중국자회사 등 자사 사업체가 중국 경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기업은 현재 취하고 있는 이전 방식이 본 법상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살펴보고 기존 방식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개인정보 해외 이전의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개인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개별 동의를 구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정부가 중국 경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4) 한국 국내 사업체가 중국 경내 개인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중국 경내 개인의 행위를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중국 경내 개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본 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 특별기구를 설치하거나 대표를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국의 개인정보 제공 제한/금지 리스트에 등재되어 향후 중국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5)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가이드라인, 실무례 등과 같은 규제기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중국 내 개인정보 관련 사업 활동을 진행 또는 계획 중이신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중국 규제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예정인지 또는 어떻게 적용하여 왔는지를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허욱 | 파트너변호사 T. 02-316-1723 E. whuh@shinkim.com
- 원중재 | 파트너변호사 T. +86-010-8447-5343 E. jjwon@shinkim.com
- 장준영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10 E. jyoja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